

# 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

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 
Jointed Cylinders for Vehicle Refrigerant

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 · 의결 : 2009월 6월 16일

지식경제부 승인 : 2009년 6월 29일



## 가스기술기준위원회

위원장

윤기봉 : 중앙대학교 교수

부위원장

김광섭 : 한진도시가스(주) 상무

당연직

김무홍 :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장  
범희권 :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장  
김재용 :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안전이사

고압가스분야

김연종 : United Pacific PLG. 대표이사  
김진석 :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  
김청균 : 홍익대학교 교수  
박반욱 :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 
백종배 : 충주대학교 교수  
윤기봉 : 중앙대학교 교수  
최문규 :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부사장

액화석유가스분야

고봉식 : 대성셀틱(주) 대표이사  
권순영 : LP가스공업협회 전무  
안병성 :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
윤재건 : 한성대학교 교수  
장석웅 : 에스이피엔씨(주) 회장  
황정호 : 연세대학교 교수

도시가스분야

김광섭 : 한진도시가스(주) 상무  
오신규 : 한국가스공사 수석연구원  
이수경 :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 
정충기 : 서울대학교 교수

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2조의2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7조의2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7조의3에 따라 가스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,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

KGS Code 제·개정 이력

| KGS Code 제·개정 이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종목코드번호           | KGS AC313 <sup>2009</sup>          |
| 코 드 명            | 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<br>기준 |



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일반사항 .....               | 1 |
| 1.1 적용범위 .....              | 1 |
| 1.2 기준의 효력 .....            | 1 |
| 1.3 다른 기준의 인정 .....         | 1 |
| 1.3.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 .....     | 1 |
| 1.3.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.....    | 2 |
| 1.4 용어정의 .....              | 2 |
| 1.5 기준의 준용 .....            | 3 |
| 2. 제조시설기준 .....             | 3 |
| 2.1 제조설비 .....              | 3 |
| 2.2 검사설비 .....              | 3 |
| 3. 제조기술기준 .....             | 4 |
| 3.1 설계(내용 없음) .....         | 4 |
| 3.2 재료 .....                | 4 |
| 3.3 두께 .....                | 4 |
| 3.4 구조 및 치수 .....           | 4 |
| 3.4.1 구조 .....              | 4 |
| 3.4.2 치수 .....              | 5 |
| 3.5 가공(내용 없음) .....         | 5 |
| 3.6 용접(내용 없음) .....         | 5 |
| 3.7 열처리(내용 없음) .....        | 5 |
| 3.8 성능(내용 없음) .....         | 5 |
| 3.9 도장 .....                | 5 |
| 3.10 안전장치 부착(내용 없음) .....   | 5 |
| 3.11 부속장치 부착(내용 없음) .....   | 5 |
| 3.12 도색 및 표시 .....          | 5 |
| 3.12.1 용기외면 도색(내용 없음) ..... | 6 |
| 3.12.2 가스종류 표시(내용 없음) ..... | 6 |
| 3.12.3 제품표시 .....           | 6 |
| 3.12.4 합격표시 .....           | 6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4. 검사기준 .....             | 7  |
| 4.1 검사종류 .....            | 7  |
| 4.1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   | 7  |
| 4.1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     | 7  |
| 4.2 공정검사 대상 심사 .....      | 8  |
| 4.2.1 심사 신청 .....         | 8  |
| 4.2.2 심사 방법 .....         | 8  |
| 4.2.3 판정위원회 .....         | 8  |
| 4.3 검사항목 .....            | 9  |
| 4.3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   | 9  |
| 4.3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     | 9  |
| 4.4 검사방법 .....            | 11 |
| 4.4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   | 11 |
| 4.4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     | 11 |
| 4.5 그 밖의 검사기준 .....       | 13 |
| 4.5.1 수입품 검사(내용 없음) ..... | 13 |
| 4.5.2 검사일부 생략 .....       | 14 |
| 4.5.3 불합격 제품 파기 방법 .....  | 14 |

**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**  
(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Jointed Cylinders  
for Vehicle Refrigerant)

## 1. 일반사항

### 1.1 적용범위

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 중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(자동차의 공기조화장치 냉매 충전용 용기로서 내용적 1리터 미만의 것을 말한다. 이하 “용기”라 한다)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 1.2 기준의 효력

1.2.1 이 기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· 의결(안건번호 제2009-4호, 2009년 6월 16일)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(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-250호, 2009년 6월 29일)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1.2.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 10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### 1.3 다른 기준의 인정

#### 1.3.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

1.3.1.1 규칙 별표 10 제4호다목에 따라 용기가 이 기준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나,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용기로서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 용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용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1.3.1.2 용기가 표 1.3.1.2에 따른 인정기준에 따라 당해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1.3.1.1에 따른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보아 검사특례 신청 · 심사 없이 그 인정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표 1.3.1.2 외국용기의 인정기준 및 공인검사기관

| 인정규격           | 공인검사기관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DOT, CGA, ANSI | DOT인증기관 |

|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BS, HSE           | HSE, Lloyds Register(국가에서 인증한 것에 한정함) 또는<br>인증기관 |
| DIN, AD-Merkblatt | TUV  |
| NF, CODAP         | APAVE, BV  |
| JIS, 고압가스보안법, JIA |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·보안원, 고압가스보안협회, 가스기<br>기검사협회          |
| AS                | 호주 주정부 인증검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규격  |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1.3.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

규칙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“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” 이란 다음 기준을 말한다.

- (1) 미국의 ASME, DOT, CGA, ANSI
- (2) 영국의 BS, HSE
- (3) 독일의 DIN, AD-Merkblatt
- (4) 프랑스의 NF, CODAP
- (5) 일본의 JIS, 고압가스보안법
- (6) 호주의 AS

### 1.4 용어정의
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**1.4.1 “기밀시험압력”** 이란 최고충전압력을 말한다.

**1.4.2 “최고충전압력”** 이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최고의 충전압력으로서 내압시험 압력이 0.8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.8 MPa을 말한다. <신설 09.5.15>

**1.4.3 “상시품질검사”** 란 제품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동일제품을 1조로 하고 그 조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기본적인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.

**1.4.4 “정기품질검사”** 란 생산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정 또는 완성된 제품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**1.4.5 “공정확인심사”** 란 생산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필요한 제조 및 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**1.4.6 “수시품질검사”** 란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은 제품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산된 제품에서 예고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.

**1.4.7 “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”** 란 제품의 설계·제조 및 자체검사 등 용기 제조 전 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**1.4.8 “형식”** 이란 구조·재료·용량 및 성능 등에서 구별되는 제품의 단위를 말한다.

1.4.9 “공정검사”란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를 말한다.

## 1.5 기준의 준용

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기의 모양·치수 등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. 다만,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 2. 제조시설기준

## 2.1 제조설비

용기를 제조하려는 자가 이 제조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(제조하는 용기에 필요한 것만을 말한다)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- (1) 절단설비
- (2) 성형설비
- (3) 접합 또는 납붙임 설비
- (4) 세척설비
- (5) 부식방지도장설비 또는 프린팅설비
- (6) 건조설비
- (7) 밸브조립설비
- (8)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

## 2.2 검사설비

용기를 제조하려는 자가 이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를 검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(제조하는 용기에 필요한 것만을 말한다)는 다음과 같다.

- (1) 고압가압시험설비
- (2) 기밀시험설비
- (3) 버니어캘리퍼스 등 두께측정기
- (4) 저울
- (5) 표준이 되는 압력계
- (6) 표준이 되는 온도계
- (7) 그 밖에 용기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

### 3. 제조기술기준

#### 3.1 설계(내용 없음)

#### 3.2 재료

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**3.2.1** 용기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, 알루미늄합금, 탄소 · 인 및 황의 함유량이 각각 0.33 % 이하 · 0.04 % 이하 및 0.05 % 이하인 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나 가공성 등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.

**3.2.2** 용기 주요부분의 재료는 강이나 경금속으로서 충전냉매에 의하여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.

**3.2.3** 냉매 누출방지용 패킹의 재료는 내구성이 큰 것으로서 충전냉매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을 초래할 열화현상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.

**3.2.4** 강에는 도금 · 도장 등의 적당한 방식대책(스테인리스강을 제외한다)을 강구한다.

**3.2.5** 용기의 재료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.

#### 3.3 두께

용기의 두께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0.125 mm 이상으로 하고, 용기 동판의 최대두께와 최소두께와의 차이는 평균두께의 20 % 이하로 한다.

#### 3.4 구조 및 치수

##### 3.4.1 구조

용기의 구조는 그 용기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한다.

**3.4.1.1** 용기의 각부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제조하고, 통상의 조작으로 냉매누출이 없고, 파손이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**3.4.1.2** 용기 접합부는 접합이 양호하고 사용 시 손으로 접촉하는 부분의 가장자리는 매끈한 것으로 한다.

### 3.4.2 치수

용기의 치수는 그 용기의 안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기의 내용적은 1 L 미만으로 한다.

### 3.5 가공(내용 없음)

### 3.6 용접(내용 없음)

### 3.7 열처리(내용 없음)

### 3.8 성능(내용 없음)

## 3.9 도장

용기(내식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)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부식방지조치를 한다.

3.9.1 용기에는 도장을 한다.

3.9.2 나사연결부(도금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)의 도막강도는 KS M ISO 1518(도료와 바니시-긁기시험)에 따라 시험하여 연필 긁기 저항성이 H 이상이 되도록 한다. 이 경우 시험편은 도료를 바른 후 120 시간 이상 건조한 원판으로부터 채취한 것으로 한다.

3.9.3 나사연결부 결합 시 도막이 벗겨져 용기내부에 떨어지거나 냉매와 동시에 용기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
3.9.4 용기의 나사연결부를  $(50 \pm 10)$  J의 토크로 조여 도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 3.10 안전장치 부착(내용 없음)

### 3.11 부속장치 부착(내용 없음)

### 3.12 도색 및 표시

### 3.12.1 용기외면 도색(내용 없음)

### 3.12.2 가스종류 표시(내용 없음)

### 3.12.3 제품표시

규칙 별표 24제1호에 따라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
- (1) 용기의 장착 ·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
- (2) 제조연월 또는 로트번호
- (3) 사용방법에 관한 주의사항
- (4) 주의문안

주의문안은 다음의 사항을 KS A 0201(활자의 기준 치수)에 따른 8포인트 이상의 문자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선명하게 표시한다.

고압가스가 충전된 용기로서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사항을 지킬 것

1. 차량용으로만 사용할 것
2. 온도가 40 °C 미만의 장소에 보관할 것
3. 용기온도를 40 °C 미만으로 유지 · 관리할 것
4. 사용 전 · 후에 불속에 넣지 말 것

- (5) 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
- (6)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
- (7) 용기의 번호
- (8) 내용적(기호 : V, 단위 : L)
- (9) 충전량(g)

### 3.12.4 합격표시

제품확인검사 ·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는 용기에 대하여 그 검사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이 ‘**KC**’ 자를 표시한다. <개정 09.5.15>



크기: 15mm×15mm

백색바탕에 흑색문자(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색상을 제한하지 아니한다)

#### 3.12.4.1 제품확인검사 대상

다음에 따라 합격표시를 한다.

- (1) 용기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합격표시 필름 등을 사전에 교부받아 제조공정 중에 표시를 한다.
- (2) 용기제조자는 합격표시 필름 등을 사용 후 매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납한다.

#### 3.12.4.2 공정검사 대상

3.12.4.1 또는 다음에 따라 합격표시를 한다.

- (1) 용기제조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합격표시 필름 등을 사전에 교부받아 제조공정 중에 표

시를 한다.

- (2) 용기제조자는 매월 표시횟수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며,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2년간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.
- (3) (2)에 따른 허위 통보를 하는 경우나 정기품질검사·공정확인심사, 수시품질검사 또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표시 필름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납한다.

## 4. 검사기준

### 4.1 검사종류

용기 검사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로 구분한다.

#### 4.1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용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용기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 실시한다.

#### 4.1.2 제품에 대한 검사

용기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에 따른 제조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.

##### 4.1.2.1 설계단계검사(내용 없음)

##### 4.1.2.2 생산단계검사

용기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다. 이 경우 용기 제조자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표 4.1.2.2에 따른 제품확인검사·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,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4.2에 따른 공정검사 대상 심사를 받는다..

표 4.1.2.2 생산단계검사의 종류 및 주기

| 종 류        |            | 주기        | 비 고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|
| (1) 제품확인검사 | 상시품질검사     | 신청시 마다    |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이외 품목                     |
| (2) 생산공정검사 | 정기품질검사     | 3월에 1회    | 제조공정·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     |
|            | 공정확인심사     | 3월에 1회    |   |
|            | 수시품질검사     | 1년에 2회 이상 |   |
| (3) 종합공정검사 |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| 6월에 1회    | 공정 전체(설계·제조·자체검사)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|
|            | 수시품질검사     | 1년에 1회 이상 |   |

##### 4.1.2.2.1 제품확인검사는 상시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
**4.1.2.2.2** 생산공정검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
- (1) 생산공정검사는 정기품질검사·공정확인심사 및 수시품질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.
- (2) 수시품질검사는 정기품질검사 및 공정확인심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한다.
- (3) 생산공정검사를 받는 자는 필요에 따라 제품확인검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.

**4.1.2.2.3** 종합공정검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
- (1) 종합공정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와 수시품질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.
- (2) 수시품질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한다.
- (3) 종합공정검사를 받는 자는 필요에 따라 제품확인검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.

**4.2** 공정검사 대상 심사**4.2.1** 심사 신청

부록 A(용기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)에 따라 용기를 제조한 이행실적이 3개월 이상 있고, 이를 증명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용기제조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**4.2.2** 심사 방법

용기제조자가 신청한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
**4.2.2.1**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부록 A(용기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)에 따라 공정확인 심사 또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.2.3에 따른 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.

**4.2.2.2** 판정위원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심사결과서를 심의하여 용기제조자가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.

**4.2.2.3**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용기제조업체에 대하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적합통지서를 발급한다.

**4.2.2.4**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용기제조업체에 대하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부적합통지서를 발급한다.

**4.2.3** 판정위원회

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판정위원회를 둔다

**4.2.3.1**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4.2.3.2 위원은 가스안전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가운데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4.2.3.3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4.3 검사항목

### 4.3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제조자가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2.1에 따른 제조설비 구비여부
- (2) 2.2에 따른 검사설비 구비여부

### 4.3.2 제품에 대한 검사

용기가 이 제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

#### 4.3.2.1 설계단계검사(내용 없음)

#### 4.3.2.2 생산단계검사

제조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생산단계검사의 검사종류별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

##### 4.3.2.2.1 제품확인검사(상시제품검사)

- (1) 4.4.2.2.1(2-1)에 따른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
- (2) 4.4.2.2.1(2-2)에 따른 외관검사
- (3) 4.4.2.2.1(2-3)에 따른 기밀검사
- (4) 4.4.2.2.1(2-4)에 따른 고압가압검사

##### 4.3.2.2.2 생산공정검사

###### (1) 정기품질검사

- (1-1) 4.4.2.2.2(1-2-1)에 따른 고압가압검사

###### (2) 공정확인심사

공정확인심사의 심사항목은 표 4.3.2.2.2(2)에 따른다.

표 4.3.2.2.2(2) 공정확인심사와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심사항목

| 구분      | 판정기준       | 적용여부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|            | 공정확인심사   | 종합<br>품질관리체계<br>심사 |
| 일반사항    | 조직         | 적정한 기술적·업무적 능력이 있는 조직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잠재적인 고장원인을 제품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또는 개발조직 보유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품질시스템      | 적정한 품질시스템 운영 및 운영성과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문서관리       | 적정한 문서관리 시스템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인적자원       |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직원 적격성 유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시설·장비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확보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설계      | 설계·개발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설계 및 개발시스템 확보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잠재적 고장영향분석, 신뢰성 평가 등을 통한 제품설계 증명 및 출력물 제공 결과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설계·개발의 타당성 확인 및 변경 절차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제조      | 구매         | 구매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공급자 평가의 구매정책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생산         |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생산공정 보유 및 실행 증명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공정승인합격판정기준 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공정관리능력 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관리계획서 및 작업지침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예방 및 예측 보전, 생산차 공구 관리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자재와 제품의 취급 및 보관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자체검사    | 검사방법 및 절차  | 제품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방법 및 절차 유지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계수값 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합격수준은 무결점 수준 유지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측정 장치 결정 및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소급성 유지, 기록관리 등의 절차 유지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측정시스템 분석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| 검사기관의 운영요건(ISO 17020)에 준하는 시스템의 운영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시정 및 예방 조치 | 부적합 사항 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운영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내부감사       | 시스템에 대한 문서화된 관리규정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의무      | 합격표시       | 합격표시에 대한 문서화된 관리규정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교육         | 품질관리시스템 교육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안전관리       | 제품불량사고 및 부적합 제품 유통 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| 그 밖의 사항 |            | 그 밖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         |

**(3) 수시품질검사**

(3-1) 4.4.2.2.2(3-2-1)에 따른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

- (3-2) 4.4.2.2(3-2-2)에 따른 외관검사
- (3-3) 4.4.2.2(3-2-3)에 따른 기밀검사

#### 4.3.2.2.3 종합공정검사

##### (1)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

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의 심사항목은 표 4.3.2.2(2)에 따른다.

##### (2) 수시품질검사

(2-1) 4.4.2.2.3(2-2-1)에 따른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

(2-2) 4.4.2.2.3(2-2-2)에 따른 외관검사

(2-3) 4.4.2.2.3(2-2-3)에 따른 기밀검사

## 4.4 검사방법

### 4.4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방법은 2.1 및 2.2에 따른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필 요한 설비를 모두 구비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.

### 4.4.2 제품에 대한 검사

#### 4.4.2.1 설계단계검사(내용 없음)

#### 4.4.2.2 생산단계검사

생산단계검사는 용기가 각 검사항목별 제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방법으로 실시한다.

##### 4.4.2.2.1 제품확인검사

###### (1) 샘플링

제품확인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 및 합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(1-1) 검사대상 용기는 두께 및 동체의 바깥지름과 모양이 동일한 것으로서 같은 날에 제조한 용기 2천개 이하를 1조로 한다.

(1-2) (1-1)에 따라 형성한 1조 중에서 표 4.4.2.2.1(1)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수의 용기(이하 "시험품"이라 한다)를 임의로 채취한다.

표 4.4.2.2.1(1) 시험 및 검사항목

| 시험 및 검사항목      | 시험품 채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|
| 외관검사           | 5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밀시험<br>고압가압시험 | 외관검사를 실시한 용기 중 1개<br>외관검사를 실시한 용기 중 1개 |

**(2) 검사요령**

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.

**(2-1)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**

용기가 3.1부터 3.12까지의 제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제조자의 자체검사 성적서를 통해 확인하고 3.3, 3.4, 3.9 및 3.12에 대해서는 임의로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다. <개정 09.6.29>

**(2-2) 외관검사**

용기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·금·주름 등이 없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.

**(2-3) 기밀검사**

기밀시험압력을 가할 때 누출이 없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.

**(2-4) 고압가압검사**

고압가압시험은 충전할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라 표 4.4.2.2.1(2)에서 정한 각각의 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변형 및 파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적합으로 한다.

표 4.4.2.2.1(2) 냉매가스 종류에 따른 시험압력

| 시험압력<br>(단위 : MPa) | 냉매가스의 종류 |          | 시험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| CFC-12   | HFC-134a |  |
| 변형시험               | 1.8      | 1.9      | 용기 내에 상온의 물을 채우고 시험압력까지 가압한 후 30초 이상 유지한다. |
| 파열시험               | 2.1      | 2.3      |  |

**(3) 합부판정**

(1)에 따라 채취한 시험품이 (2)에 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한 용기 모두가 합격한 것으로 하고, 시험품이 4.4.2.2.1(2)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에 속한 모든 용기가 불합격된 것으로 한다.

**4.4.2.2.2 생산공정검사****(1) 정기품질검사****(1-1) 샘플링**

정기품질검사의 시료수는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의 시료수에 따른다.

**(1-2) 검사요령**

(1-2-1) 고압가압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4)에 따른다.

**(1-3) 합부판정**

(1-3-1) 용기가 (1-2-1)의 검사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1-3-2) 용기가 부적합 된 경우에는 4.2.2.3에 따른 적합통지서를 회수하고 용기제조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며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1-3-3) 용기제조자는 부적합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산공정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.

**(2) 공정확인심사**

(2-1) 부록 A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2-2) 공정확인심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4.2.2.3에 따른 적합통지서를 회수하고 용기제조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며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2-3) 용기제조자는 부적합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산공정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.

### (3) 수시품질검사

#### (3-1) 샘플링

수시품질검사의 시료수는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의 시료수에 따른다.

#### (3-2) 검사요령

(3-2-1)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1)에 따른다.

(3-2-2) 외관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2)에 따른다.

(3-2-3) 기밀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3)에 따른다.

#### (3-3) 합부판정

(3-3-1) 용기가 (3-2-1)부터 (3-2-3)까지의 검사에 모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3-3-2) 용기가 부적합 된 경우에는 4.2.2.3에 따른 적합통지서를 회수하고 용기제조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며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3-3-3) 용기제조자는 부적합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산공정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.

### 4.4.2.2.3 종합공정검사

#### (1)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

(1-1) 부록 A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1-2)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4.2.2.3에 따른 적합통지서를 회수하고 용기제조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며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1-3) 용기제조자는 부적합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.

#### (2) 수시품질검사

##### (2-1) 샘플링

수시품질검사의 시료수는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의 시료수에 따른다.

##### (2-2) 검사요령

(2-2-1)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1)에 따른다.

(2-2-2) 외관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2)에 따른다.

(2-2-3) 기밀검사의 검사요령은 4.4.2.2.1(2-3)에 따른다.

##### (2-3) 합부판정

(2-3-1) 용기가 (2-2-1)부터 (2-2-3)까지의 검사에 모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2-3-2) 용기가 부적합 된 경우에는 4.2.2.3에 따른 적합통지서를 회수하고 용기제조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며 4.4.2.2.1에 따른 제품확인검사를 실시한다.

(2-3-3) 용기제조자는 부적합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종합공정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.

## 4.5 그 밖의 검사기준

### 4.5.1 수입품 검사(내용 없음)

#### 4.5.2 검사일부 생략

##### 4.5.2.1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제품

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한 용기에 대하여 규칙 제38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고압가압검사
- (2) 기밀검사. 다만, 기밀검사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시는 검사 실시

##### 4.5.2.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제품

4.5.2.2.1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용기가 규칙 제38조제4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- (1) 규칙 제9조의 제조기술기준에 따라 제조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제조된 것으로 표 4.5.2.2.1(1)에 따른 국가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제조되고 그 국가의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것

표 4.5.2.2.1(1) 외국용기의 국가별 인정기준 및 공인검사기관

| 국 가 | 인정규격              | 공인검사기관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미 국 | DOT               | DOT 인증기관   |
| 영 국 | BS, HSE           | HSE, Lloyd's Register(국가에서 인증한 것만 적용)<br>또는 인증기관 |
| 독 일 | DIN, AD-Merkblatt | TUV  |
| 프랑스 | NF, CODAP         | APAVE, BV  |
| 일 본 | JIS, 고압가스보안법      |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·보안원, 고압가스보안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호 주 | AS                | 호주 주정부 인증검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(2) (1)에 따른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으로 1.3.1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은 것

4.5.2.2.2 4.5.2.2.1(1) 또는 4.5.2.2.1(2)에 따른 외국용기는 해당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합격증빙서류(시험성적서 등)로 기밀검사(다만, 기밀검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는 재검사 실시)를 생략 받을 수 있다.

#### 4.5.3 불합격 제품 파기 방법

규칙 별표 23제1호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용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파기한다.

4.5.3.1 불합격 된 용기에 대하여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복원할 수 없도록 한다.

4.5.3.2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입회 하에 용기제조자가 실시하게 한다.

## 부록 A 용기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

| 1. 서문       |   |
|-------------|---|
|             | <p>가. 이 기준은 생산단계검사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를 통해서 용기를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다.</p> <p>나. 이 기준은 일반사항, 설계, 제조, 자체검사, 의무 조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, 용기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이 생산단계검사 중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기 위한 요구사항에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.</p> |
| 2. 일반사항     |   |
| 가. 조직       |   |
| (1)         | 고객 및 법적요구사항에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· 업무적 능력이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.   |
| (2)         | 최고경영자는 품질시스템에 필요한 공정 및 절차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   |
| (3)<br>【종합】 | <p>설계 과정 또는 장기간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장형태 등을 연구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연구 · 개발 조직을 보유하여야 한다.</p> <p>(가) 연구 · 개발책임자 및 인력<br/>(나) 연구 · 개발에 필요한 적정 설비 및 장비</p>  |
| 나. 품질시스템    |   |
| (1)         | 제조업소는 이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시스템을 수립, 문서화하고 실행하여야 한다.   |
| (2)         | 품질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 시스템의 완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,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  |
| (3)         | <p>최고경영자는 품질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, 그리고 품질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행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.</p> <p>(가)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의 수립<br/>(나) 경영검토(품질시스템의 효과성 및 제품의 개선)의 수행</p>  |
| 다. 문서관리     |   |
| (1)         | <p>품질시스템의 문서화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(가)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<br/>(나) 품질매뉴얼<br/>(다) 이 기준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및 기록</p>  |
| (2)         | <p>품질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.</p> <p>(가) 문서의 승인, 검토, 갱신 및 재승인<br/>(나) 문서의 식별(최신본, 외부출처 문서 등) 및 배포 관리<br/>(다) 효력 상실 문서의 오사용 방지</p>  |
| (3)         | 기록은 품질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기록의 식별, 보관, 보호, 검색, 보유기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를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.   |
| 라. 인적자원     |   |
| (1)         | <p>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은 적절한 학력, 교육훈련, 숙련도 및 경력에 근거하여 적격하여야 하며 제조업소는 문서화된 절차를 통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(가) 인원에 대한 적격성 결정 수행<br/>(나) 적격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제공 및 효과성 평가<br/>(다) 적격성에 대한 적절한 기록 유지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2)<br>【종합】 | 제품의 설계 · 개발에 책임을 가진 인원의 경우 설계 · 개발 요구사항을 달성하고 적용할 도구 및 기법에 숙련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   |
| 마. 시설 및 장비  |   |

|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|
| (1)<br>【주기】 | 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설, 장비 및 업무환경을 결정,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한다.<br>(가) 건물, 업무장소 및 유 텔리티<br>(나) 프로세스장비(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)<br>(다) 지원서비스(운송, 통신 등)   |
| (2)<br>【주기】 | 제품 및 제조공정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현장을 정돈,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   |
| (3)<br>【종합】 | 종업원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설계, 개발 및 제조활동에 표현되어야 한다.   |
| 3. 설계       |  |
| 가. 설계 및 개발  |  |
| (1)<br>【종합】 |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실현할 수 있는 설계 및 개발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   |
| (2)<br>【종합】 | 제품설계출력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잠재적 고장영향분석 등 분석결과 및 신뢰성결과<br>(나) 제품의 특성, 필요시 시방서<br>(다) 해당되는 경우, 제품의 실수방지를 위한 조치<br>(라) 도면 또는 수학적 기초데이터가 포함된 제품의 정의<br>(마) 제품설계검토 결과        |
| (3)<br>【종합】 | 공정설계출력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도면 및 필요시 시방서<br>(나) 제조공정 흐름도 및 레이아웃<br>(다) 잠재적 고장영향분석 등 분석 결과<br>(라) 관리계획서<br>(마) 작업지침서<br>(바) 공정승인합격기준<br>(사) 제품/공정 부적합사항에 대한 검출 및 피드백 방법 |
| (4)<br>【종합】 | 설계 및 개발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타당성 확인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  |
| (5)<br>【종합】 | 설계 및 개발의 변경은 쉽게 파악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.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경우 검토, 검증, 타당성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.   |
| 4. 제조       |  |
| 가. 구매       |  |
| (1)<br>【주기】 |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.  |
| (2)         | 규정된 구매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선정기준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선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   |
| (3)<br>【종합】 | 공급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구매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급자 관리방법은 달라져야 한다.   |
| 나. 생산       |  |
| (1)         | 제조업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리조건하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.<br>(가) 필요에 따른 업무지침서의 사용<br>(나) 적절한 장비의 사용<br>(다) 측정의 실행<br>(라) 공정승인합격판정기준의 사용  |
| (2)<br>【주기】 | 제조업소는 제조단계에서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.   |

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(3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제조업소는 제조단계에서 측정 요구사항 및 추적성과 관련하여 제품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.   |
| (4)<br>【주기】         | 작업준비는 작업의 첫 가동, 자재의 교체 또는 작업변경시 마다 검증되어야 한다.   |
| (5)<br>【종합】         | 각 공정에 대한 적절한 통계적 기법은 양산 전에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. 산포, 공정능력 같은 기본적 개념은 조직 전반에서 이용되어야 한다.   |
| (6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제품, 제조공정에서 잠재적 고장영향분석 등 분석결과를 고려한 관리계획서를 갖추어야 한다.  |
| (7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원을 위하여 문서화된 작업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지침서는 작업장에서 쉽게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.   |
| (8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주요공정을 파악하고 기계/장비/치공구의 보전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계획된 종체적 예방보전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. 시스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계획된 보전 활동<br>(나) 장비, 치공구 및 계이지의 포장 및 보전<br>(다) 주요 제조장비에 대한 교체용 부품의 가용성<br>(라) 보전 활동의 문서화, 평가 및 개선<br>(비) 생산, 수리 또는 폐기와 같은 상태를 규정한 식별 |

## 5. 자체검사

## 가. 검사방법 및 절차

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(1)<br>【주기】         | 제조업소는 수행하여야 할 검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. 이는 제품생산공정의 적절한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 |
| (2)<br>【주기】         | 검사한 제품에 대하여는 합격판정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가 유지되어야 한다. 기록에는 제품의 불출을 승인하는 인원이 나타나야 한다.  |
| (3)<br>【종합】<br>【주기】 | 계수값 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합격수준은 무결점이어야 한다.   |
| (4)<br>【주기】         | 측정은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측정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.<br>(가)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전에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으로 교정 또는 검증. 그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된 근거를 기록<br>(나) 교정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<br>(다) 측정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<br>(라) 취급, 유지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, 열화로부터 보호 |
| (5)<br>【주기】         | 교정 및 검증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측정값은 보정의 형태로 활용되어져야 한다.   |
| (6)<br>【종합】         |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각 형태의 측정 및 시험의 결과에 나타난 측정시스템의 변동을 분석하여야 한다.   |
| (7)<br>【종합】         | 제조업소의 시험실은 다음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시스템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한다.<br>가) 인원, 장비 및 시설의 적격성<br>나) 시험을 관련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<br>다) 외부시험실은 KS A ISO/IEC 17025 또는 동등한 인정기관  |

## 나. 시정 및 예방조치

|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|---|
| (1)<br>【주기】 | 부적합품 및 의심스런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|
| (2)         |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.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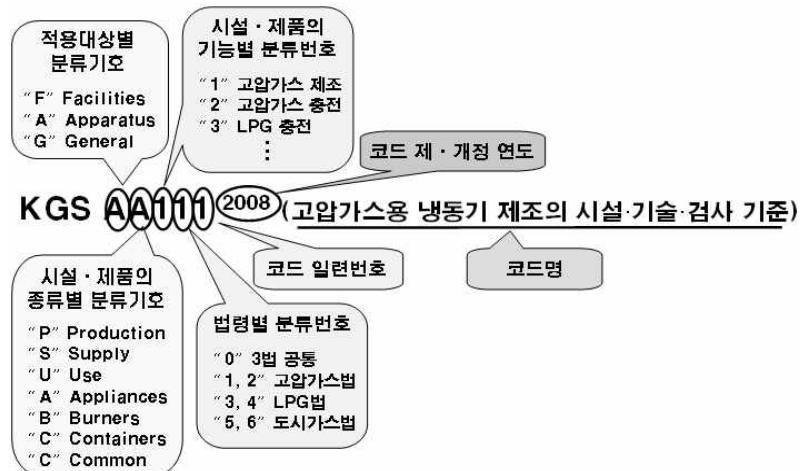
|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| (가) 부적합의 검토 (고객불평 포함)<br>(나) 시정조치의 결정, 실행 및 기록   |
| (3)         | 품질방침, 품질목표, 심사결과, 데이터분석, 시정조치, 예방조치 및 경영검토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  |
| (4)         |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.  |
| 다. 내부감사     |  |
| (1)         | 제조업소는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계획된 주기로 내부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   |
| (2)         | 감사의 계획, 수행, 감사의 독립성 보장, 결과의 보고 및 기록유지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은 문서화된 절차에 규정되어야 한다.   |
| 6. 의무       |  |
| 가. 합격표시     |  |
| (1)<br>【주기】 | 제조업소는 합격표시(필증 또는 각인)에 대한 관리규정을 문서화해야 하며, 합격표시의 수령·사용·보관, 폐기 등에 관한 기록은 즉시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>(가) 합격표시(필증 또 각인)는 반드시 권한 있는 직원만이 취급<br>(나) 합격표시는 반드시 계획된 절차에 의하여 최고경영자/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거쳐 사용<br>(다) 합격표시의 사용내용에 대한 기록<br>(라) 합격표시의 오용방지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<br>(마) 합격표시는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 |
| 나. 교육       |  |
| (1)<br>【주기】 |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자하는 제조업소는 품질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용기의 품질 및 안전관리 관련교육을 1인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  |
| (2)         | 제조업소는 3년을 주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용기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1인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.  |
| 다. 안전관리     |  |
| (1)         | 제조업소는 최근 1년간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없고 수집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이 없어야 한다.   |
| (2)<br>【종합】 | 제조업소는 최근 3년간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없고 수집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이 없어야 한다.   |
| 라. 그 밖의 사항  |  |
| (1)         | 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사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  |
| (2)         |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상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   |

## [비고]

1. 【종합】은 종합공정검사 대상에만 적용하는 기준
2. 【주기】는 검사주기에 따른 검사시 적용하는 기준
3. 표시가 없는 조항은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공통기준

##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

KGS(Korea Gas Safety)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·기술·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.



| 분류                   | 기호                    | 시설구분   | 분류                 | 기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구분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품(A)<br>(Apparatus) | 기구(A)<br>(Appliances) | AA1xx  | 냉동장치류              | 제조·충전<br>(P)<br>(Production) | FP1xx | 고압가스 제조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2xx  | 배관장치류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2xx | 고압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3xx  | 밸브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3xx | LP가스 충전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4xx  | 압력조정장치류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4xx |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5xx  | 호스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P5xx |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6xx  | 경보차단장치류            | 시설(F)<br>(Facilities)        | FS1xx | 고압가스 판매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A9xx  | 기타 기구류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2xx | LP가스 판매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연소기(B)<br>(Burners)   | AB1xx  | 보일러류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3xx | LP가스 집단공급시설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2xx  | 히터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4xx |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3xx  | 렌지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S5xx |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B9xx  | 기타 연소기류            | 저장·사용<br>(U)<br>(Use)        | FU1xx | 고압가스 저장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용기(C)<br>(Containers) | AC1xx  | 탱크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2xx | 고압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2xx  | 실린더류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3xx | LP가스 저장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3xx  | 캔류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4xx | LP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AC4xx  | 복합재료 용기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U5xx | 도시가스 사용시설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AC9xx                 | 기타 용기류 | 일반(G)<br>(General) | 공통(C)<br>(Common)            | GC1xx | 기본사항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GC2xx | 공통사항         |

KGS AC313 2009

